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10-1-16

규정번호 10-1-16
제정일자 2016.9.2
최근개정 2018.8.27
개정차수 1차 개정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기본계획 수립
2.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예·결산
3.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운영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공학·정보학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8.27)

②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8.27)

③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항 신설 2018.08.27)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항 변경 2018.08.27)

제5조(조직) ①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 또는 연구원(계약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한다.(개정 2018.08.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운영 기본계획 및 예・결산
2. 센터운영 관련 제규정 제・개정
3. 센터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센터의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회의록은 센터에 보관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우리대학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